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7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(30→45만원)상향 되었으므로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도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(30→45만원)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일반우편 송달기준을 45만원으로 변경(안 제5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4. 4. 18. ~ 5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)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24.5.1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30만원”을 “4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·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, 1매당 세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 <u>45만원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
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재정관리국 재산세과 김주희 (☎ 02-3153-8715)